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95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성일종 · 고동진 · 김미애
최수진 · 김석기 · 강대식
추경호 · 송석준 · 한기호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분배 시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등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위협이 증가하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군사용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용 주파수 확보 시에도 민간 통신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용 드론의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이 사용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
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드론”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주파수분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주파수분배) ① ----- ----- ----- -----,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이 사용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② (생략)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 ----- ----- ----- ----- ----- --드론----- -----

<u>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 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u> 1. ~ 6. (생략) ④ ~ ⑦ (생략)	----- ----- -----.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